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11년 8월 16일

신한 BNPP 봉쥬르 동남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(H)[주식]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
-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 종류 C-v 수익증권
1.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 종류 C-v 수익증권
1.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<신설> 종류 C-v 수익증권 가입자격 :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환매수수료 : 3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30% 보수 :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90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2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60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30%
1.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	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	제2부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 <신설> 종류 C-v 수익증권 가입자격 :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환매수수료 : 3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30%
1.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신설> 종류 C-v 수익증권 가입자격 :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환매수수료 : 3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30% 보수 :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90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2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60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30% < 기타 관련 정보 변경 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: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<신설> 2011. (). () :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

간이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1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신설> 종류 C-v 수익증권
1.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신설> 종류 C-v 수익증권 가입자격 :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환매수수료 : 3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30% 보수 :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90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2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60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30% < 기타 관련 정보 변경 >
1.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3부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	제3부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	제3부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및 환매 절차 <신설> 종류 C-v 수익증권 가입자격 :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환매수수료 : 30일미만 환매시: 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30%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

항목	변경전	변경후
<p>1.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	<p>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<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> < 생략 ></p>	<p>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<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> < 현행과 동일 > - < 신설 > <u>종류 C-v 수익증권</u> <u>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</u></p>
<p>1.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	<p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< 생략 > 1. ~ 8. < 생략 > < 신설 ></p>	<p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< 현행과 같음 > 1. ~ 8. < 현행과 같음 > <u>9. 종류 C-v 수익증권</u></p>
<p>1.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39조 (보수)</p>	<p>제39조 (보수) ① ~ ② < 생략 > ③ < 생략 > 1.~8. < 생략 > < 신설 ></p>	<p>제39조 (보수) ① ~ ② < 현행과 같음 > ③ < 현행과 같음 > 1.~8. < 현행과 같음 > < 신설 > <u>9. 종류 C-v 수익증권</u> <u>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9.00]</u> <u>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20]</u> <u>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60]</u> <u>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0.30]</u></p>
<p>1.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40조 (판매수수료)</p>	<p>제40조 (판매수수료) ① ~ ② < 생략 > ③ < 생략 > 1.~2. < 생략 > 3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-v 수익증권: 없음</p>	<p>제40조 (판매수수료) ① ~ ② < 현행과 같음 > ③ < 현행과 같음 >. 1.~2. < 현행과 같음 > < 신설 > <u>3. 3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-v 수익증권: 없음</u></p>
<p>1.변액보험 특별계정용 클래스 신설(종류 C-v 수익증권) : 제41조 (환매수수료)</p>	<p>제41조 (환매수수료) ① < 생략 >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종류 A1 수익증권, 종류 C-v 수익증권 : A.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 B.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 2~3. < 생략 ></p>	<p>제41조 (환매수수료) ① < 현행과 같음 >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종류 A1 수익증권, 종류 C-v 수익증권 및 종류 C-v 수익증권 : <u>A. 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B. 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u> 2~3. < 현행과 같음 ></p>